

# ◎ 非常戒嚴

○ 現行: §52

第 52 條 ① 大統領은 戰時·事

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 써 軍事上の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 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 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 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 고하여야 한다.

⑤ 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 民主黨: §56  
現行과 같음

○ 民主黨: §59

第 79 條 ① 大統領은 戰時·事

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 써 軍事上の 필요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 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 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暫定的으로 言論·出版·放送·放映·集會·結社의 自由와 政府의 權限에 관한 特別措置를 할 수 있고 法院이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地域에 限하여 令狀制度와 法院의 權限에 관한 特別措置를 할 수 있다.

④ 大統領이 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7日以內에 國會의 召集을 要求하고 그 同意를 받아야 한다. 國會에서 同意를 받지 못하거나 國會가 戒嚴의 解除를 決議한 때에는 戒嚴은 그때부터 效力을 잃는다.

## ○ 非常戒严의 效力

- 民主党案에서는 「法院이 그 職務를 수행할수 없는 地域」에 관하여 令狀制度나 法院의 权限에 관한 特別措置를 할수 있도록 制限하고 있는바,  
(民主党案은 第2次條에서는 「法院이 权限은 正常的으로 行使할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憲法소회의 裁奪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制限은 戒严制度가 政治적으로 濫用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戒严의 發動要件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 軍事上의 필요 또는 公衆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限격히 制限되어 있다 (이는 緊急命令의 경우보다 훨씬 限격한 要件임.)  
또한 戒严은 全國적으로 實施하는 경우도 있으나 必要한 地域에 局限하여 實施하는 것이 原則이므로 政治的 理由에 의하여 戒严이 發令되거나 令狀制度나 法院의 权限에 관한 特別措置를 濫用할 수지는 충분히 防止할수 있음

- 「法院이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地域」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체가 政治的 判斷이 될 것이므로 实效性도 의문임

\* 「放送·放映」은 言論·出版의 개념이 포함되므로 이를 따로 明示할 필요는 없을 것임.

### ○ 戒嚴에 대한 事後統制

- 民主黨黨이 아닌 戒嚴宣布후 大統領은 7日이내에 國會議의 召集을 요구하되 그 期間內에 同意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戒嚴의 效力을 잃도록 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表現이 다소 不明確)

- 오늘날 戰爭樣相은 대륙로 파괴·심상, 극심한 混亂이 유발되는 情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首都 서울이 戰線이 인접하여 있어 戰時에 國會議이 7日이내에 召集되어 同意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國會議 同意가 없는 경우 戒嚴이 自動失效되도록 한다면 戒嚴制度를 둔 본래의 취지를 삼킬 수 없을 것임

- 중전의 契機이 아닐 民主黨黨의 이같은 경우에도 國會議은 언제든지 戒嚴解除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合理的 統制가 가능함